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공간 ‘아트애비뉴27’

공연장 정기대관 규정

제 1장 대관 운영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예술과가 운영하는 문화공간 ‘아트애비뉴27’ (이하 “운영자” 라 한다) 공연장 정기대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관의 범위)

공연장은 문화예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, 단체, 예술인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.

- ① 상업적 목적의 행사
- ② 정치적, 종교적 목적의 집회 또는 활동
- 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
제3조(대관신청 및 절차)

- ① 대관자는 분기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접수는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.
- ② 공공연장은 무상으로 제공되며, 별도의 대관료나 장비 사용료는 부과되지 않는다.
- ③ 분기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.
 - 1. 1분기(1~3월): 전년도 12월 1~2주 예정
 - 2. 2분기(4~6월): 3월 1~2주 예정
 - 3. 3분기(7~9월): 6월 1~2주 예정
 - 4. 4분기(10~12월): 9월 1~2주 예정
- ④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은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한다.
- ⑤ 운영자는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승인 여부를 미추홀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한다.
- ⑥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이 없는 일정에 한해서는, 개별 문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.

제4조(대관일정)

- ① 공연장 정기대관은 매주 월·화·수·금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, 1회 2시간 기준으로 운영된다.
- ② 분기별 신청자 수에 따라 1팀당 공연 횟수는 최소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제한될 수 있다.
- ③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일로 대관이 불가하다.

제5조(대관 승인 기준)

다수의 신청이 경합할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대관 우선권을 부여한다.

- ① 1순위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·인천시설공단·주안시민지하도상가에서 주최·주관하는 행사
- ② 2순위: 민간이 주최하되 시·구의 후원 또는 지원을 받는 행사
- ③ 3순위: 기타 단체 및 개인(이전 회차 미신청자 우선)

제6조(대관 거절 및 승인 취소)

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승인하지 않거나, 이미 승인된 대관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.

- ①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
- ② 규정에 위배 되는 행위가 예상되는 경우
- ③ 운영 시간 외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

제7조(대관 취소 및 변경)

- ① 대관자는 공연 예정일 최소 7일전까지 운영자에게 취소 의사를 알려야 한다.
- ② 불가피한 사정(사망, 사고, 입원 등)으로 취소할 경우, 공연일 이후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운영자가 이를 인정할 경우 불이익 없이 취소된다.

제8조(위반 시 제재)

- ① 다음 사유 발생 시 **1회 패널티**가 부과되며, 누적 시 대관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 1. 사전 연락 없이 무단 취소한 경우
 2. 공연 당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
 3. 사유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
 4. 승인 일정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
 5. 공연 종료 후 정리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② 패널티 누적시 조치는 다음과 같다.
 1. 2회: 6개월간 대관 제한
 2. 3회: 1년간 대관 제한
- ③ **일정 양도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일정은 취소되며, 양도자 및 수혜자 모두 1년간 대관이 제한된다.**

제 2장 대관자 이용 수칙

제9조(이용 준수 사항)

- ① 공연장 내 설치된 음향 및 조명 장비는 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.
- ② 모든 공연에는 음향 담당자 1인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, 공연 당일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.
- ③ 장비 사용자는 운영자가 제공하는 ‘음향 장비 사용 안내서’를 사전에 숙지하고, 이에 따라 장비를 운용해야 한다.
- ④ 장비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, 즉시 운영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하며, 임의로 수리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.
- ⑤ 장비 파손, 분실 등 사용자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해당 대관자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.

제10조(시설 이용 수칙)

- ① 공연장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은 금지한다.
- ② 공연 중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, 관람객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.

- ③ 공연 후 시설 및 장비는 원장복구하고, 정리정돈을 완료해야 한다.
- ④ 출연자 및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(관람객, 일반인 등)은 무대출입은 엄격히 금지되며, 위반 시 공연 중단 또는 퇴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.
- ⑤ 공연장 및 공연 장비의 개인적 사용은 불가합니다.

제11조(시설물 설치 시 유의사항)

- ① 대관자는 기존 시설에 변경을 가하거나 가설물의 설치 또는 특수한 장비 반입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사용 완료 후 즉시 반입 설치한 장비를 철거하여야 한다.
- ② 대관 사용자의 장비 등이 손상되거나 분실될 경우 운영자에게 손·망실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.
- ③ 무대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(예: 못질 등)는 금지한다.

제12조(대관자의 안전관리)

- ① 대관자는 공연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
- ② 공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,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
제13조(손해배상)

대관자의 과실로 인해 장비가 파손되거나 시설이 훼손된 경우, 해당 대관자에게는 실비 변상 책임이 발생 할 수 있다.

제 3장 보칙

제14조(운영 규정의 동의 및 준수)

- ① 공연장 대관자는 본 운영 규정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.
- ② 운영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공연장 이용 신청은 접수되지 않으며, 이용 승인이 불가능하다.
- ③ 신청 완료는 본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동의를 의미한다.

제15조(규정의 개정)

본 규정은 아트애비뉴27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한다.

제16조(문의 및 해석)

이 규정에 관한 해석이나 기타 문의 사항은 아트애비뉴27 운영팀 (032-864-8100)으로 한다.